

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관련 시정 조치 지시 결과 공지

1. 관련

가.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651(2021. 1. 28.): 「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관련 시정 조치 지시」

나.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656(2021. 1. 29.): 「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알림(2차)」

2.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관련 시정 조치 지시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가. 대한요트협회는 2021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(2021. 1. 22.(금)) 및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(2021. 1. 25.(월))의 의결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「제19대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 당선인 결정 무효 알림 및 협조 요청」 공문(대한요트협회-227(2021. 1. 26.))을 발송하였습니다.

나. 이에 대한 회신으로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(선거의 중립)제5항 및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(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)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당선무효결정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

다. 추가 공문을 통하여, 회원종목단체규정 제55조(제한사항)에 해당되어 단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체의 정상적인 행정운동을 위해 정기대의원총회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는 내용 또한 전달하였습니다.

라. 위의 내용에 따라 우리 협회는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(2021. 1. 29.(금))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준수할 예정입니다.